

2019년도 제26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1. 22.(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 위원(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9건(안건번호 제2019-153970호~15402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본건 심의안건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특히, 이번 안건들은 모두 웹하드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음악저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안건번호 제2019-153970호~154029호는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본 건은, '●●●●' 등 8개 OSP 이용자들이 국내 최신 대중가요 음원파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인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아닌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이용자들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3970-154029호 69건의 게시물 는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 상기 안전은 저작물의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다만 이미 전송중단 되거나 삭제조치된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할 것 임.

**2019년 제26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22.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오영주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